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표조사전문기관 결격사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12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8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전문기관의 등록기준(권향엽의원안)	7
2.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	12
3.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	22
※ 참고자료	26
1. 입법례: 결격사유 관련	26
2. 입법례: 범죄경력조회 관련	29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5812호】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22.
3. 회 부 일 : 2024. 11. 25.

【의안번호 제2205882호】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5812호】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

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의안번호 제220588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

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권향엽의원안은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등록요건을 신설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은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대표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안 제51조의2 신설), ② 동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며(안 제52조), ③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김성원의원안 제52조의2, 권향엽의원안 제229조의2 신설).

[표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김성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전문기관 등록요건 (안 §51⑥)	-	▲시설·장비 및 인력과 조직 확보, ▲(임직원 제한) 현직 등록 변리사,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 결격사유 (안 §51의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임직원 금지 -▲현직 등록 변리사, ▲변리사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 원을 겸하는 자, ▲이 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 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 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대표 금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 기관 등록 신청 금지, 전문 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금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

구분	김성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직 등록 변리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u>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의 등록 금지</u>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안 §52)	○<u>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에 다음 사유 추가</u>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허청 소속 직원(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포함)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u>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에 다음 사유 추가</u>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제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김성원의원안 제52조의2, 권향엽의원안 제229조의2)	

1. 전문기관의 등록기준(권향엽의원안)

개정안은 전문기관 등록요건으로 ‘제1항¹⁾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권향엽의원안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u> <u>2.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u> <u>3. 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u>

1)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없을 것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⑦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 ----- -----.
---	---

현행 「상표법」 제51조2)에 근거한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상표법」 제51조제6항에서는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등록기준을 규정하며,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

2)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전문기관 등록기준 등 관련 규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u>등록기준</u>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기관 등록요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 다. ~ 라. (생략)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지 않을 것

이에 따라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호에서는 현직 등록 변리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³⁾

한편,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특허청의 심사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음.⁴⁾

이에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추가로 등록기준에 ‘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 사유가 되는 등록기준을 하위

3)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출처: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360)

4) 2023년도 특허청 소관 국정감사(2023.10.27.)에서 상표조사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특허청 퇴직 공무원 채용 문제, 퇴직자 설립 전문기관에 일감 몰아주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음.

법령에 포괄위임하는 대신 결격사유를 포함한 대략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51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은 등록요건이라기보다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록의 결격사유를 다루는 조항(권향엽의원안 기준 안 제51조의2)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김성원의원안 제5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형식 및 내용의 측면을 함께 검토하도록 함.

2.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

김성원의원안은 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반면, 권향엽의원안은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안 제51조의2 신설), 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은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신 설>	<u>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u> <u>1.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u> <u>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u> <u>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u>	<u>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u> <u>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u>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u>

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다만,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표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전문기관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52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5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2조의 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	--	---

	<u>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을 위반한 경우</u>	<u>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 분을 위반한 경우</u>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 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u>정지를 명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u>	② ----- ----- ----- <u>정지 등을</u> ----- -----.	② · ③ (현행과 같 음)
③ (생 략) 부칙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신 설>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신 설>	<u>제2조(경과조치) 제52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 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u>	

전문기관 제도의 목적은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심사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등이 심사관의 심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관련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등록취소 사유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상표법」 등에 따른 명령·처분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하는 등의 제재가 불가능하고,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특허청의 심사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⁵⁾하여도 현행법상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임직원 결격사유(김성원의원안) 또는 등록 결격사유(권향엽의원)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전문기관 도입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특정 대상자를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청 직원 등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자가 특허청 사업에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5) 특허청 직원이 가족 명의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 및 관련 기사(**)

(*) 해당 상표조사 전문기관은 감사원 감사 중이고 특허청 직원은 징계(파면) 진행 중('23.12월)

(**) 특허청 간부 '비리 의혹' . . . 뇌물 받거나 가족명의로 업체 차린 정황(TBC, '23.9.19)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 5] 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대표 제한 중 특정대상자 관련 사항

김성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 결격사유(안 §51의2) - 임직원 금지: <u>현직 등록 변리사(제1항제1호), 변리사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제1항제2호)</u> - 대표 금지: <u>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제3호), 현직 등록 변리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제4호)</u> ○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추가(안 §52) - 특허청 소속 직원(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포함)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제5호)	○ 전문기관 등록요건(안 §51⑥) - (임직원 제한) <u>변리사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및 현직 등록 변리사(제2호),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제3호)</u>

다만, 개정안은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등에 ‘현직 등록 변리사’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⁶⁾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변리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권향엽의원안 제51조제6항제3호, 김성원의원안 제51조의2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5호)로 결격사유 대상을 확장하고

6)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있는데 대통령령을 통해 친인척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16조⁷⁾에서는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유보원칙과 함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다수의 입법례에서 ‘미성년자 등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법률 등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에서는 ‘배우자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까지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⁸⁾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전문기관의 사업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

7)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8) 참고자료 1. 입법례: 결격사유

허청 직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변리사 등의 전문기관 대표 및 임직원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2건의 개정안 내용상 차이가 있는바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하되 전문기관 임직원과 대표의 결격사유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전문기관 대표의 결격사유에 ‘3년 이내에 퇴직한 특허청 공무원’도 포함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인 전문기관의 대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⁹⁾ 하는 등¹⁰⁾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등을 규정할 경우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체계상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2건의 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의 임직원·대표 등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

9) 대표 결격사유에 ‘특허청 3년 이내 퇴직자’에 포함할 경우, '03년부터 전문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특허기술진흥원(기타 공공기관)에 특허청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 현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제외한 다른 조사 전문기관은 모두 민간 회사임

10) 그 밖에 ‘변리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김성원의원안의 전문기관 등록 취소사유(안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전문기관 지분의 일부 소유’의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전문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죄·뇌물죄 등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자료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제공 위반 시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므로 ‘등록의 결격사유’¹¹⁾(김성원의원안 제51조의2, 권향엽의원안 제51조제6항제2호·제3호 및 제51조의2) 및 ‘등록취소’(김성원의원안·권향엽의원안 제52조)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결격사유는 특정 직업이나 사업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김성원의원안(안 제51조의2제1항제3호)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권향엽의원안(안 제51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은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벌칙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1) 유사 입법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넷째, 김성원의원안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치유하는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임직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등록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권향엽의원안(제52조제1항제3호) 및 유사 입법례¹²⁾를 고려하여 흠결을 치유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동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 등의 근거 규정들을 필요로 있을 것으로 보임.¹³⁾

여섯째, 개정안은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참고자료 2. 입법례: 범죄경력조회 관련’ 참조

3.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김성원의원안 및 권향엽의원안)

개정안은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려는 것임(김성원의원안 제52조의2, 권향엽의원안 제229조의2).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성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신 설>	제52조의2(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 「특허법」 제226조의2제1항, 「실용신안법」 제4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26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⁴⁾

14) 「특허법」 제226조, 「실용신안법」 제46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25조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

이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 선행기술조사, 디자인 조사분석 등을 위해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임.

한편,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¹⁵⁾ 등 다수의 법률에서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¹⁶⁾

상표전문기관은 상표심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 청렴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15) 「발명진흥법」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위탁·대행·지정 등을 통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인,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목적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출처: 「법제이론과 실제실무」(국회 법제실, 2019년)

이에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¹⁷⁾ 및 뇌물에 관한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¹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전문기관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임직원 외에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임직원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⁹⁾

17)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9) (유사 입법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축사법」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또한,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²⁰⁾와 같이 부칙에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법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20) (유사 입법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1

입법례: 결격사유 관련

□ 법인의 임직원 및 대표에 대한 결격사유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방위사업법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결격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 9. (생략)

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